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김진구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품질교육팀 부교수

1. 머리말

제품이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자, 판매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민법상 배상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라 하는데, 이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26개국에 채택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도 품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PL법 시행은 기업의 비용부담증가와 소비자들의 소송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제조물책임의 意義

가.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공급자책임이라고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닌 “배상책임”을 말한다.

미국에서 한 소녀가 에어로설 향수를 그녀의 친구에게 뿌려주다가 촛불에 가스가 인화되는 바람에 크게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향수병에 화기주의 경고나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표시상의 과실”을 들어 향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7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물책임에서는 엄격책임이론에 따르므로 과실존재의 입증과 계약관계의 요건 없이 배상청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다음 사항만 입증하면 된다.

- ① 판매(생산)자가 결함상품을 판매(생산)한 것
- ② 결함상품이 위해(危害)의 원인이 있는 것
- ③ 손해로 법적 관련성을 갖는 것

④ 손해가 발생한 것

등으로서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소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판매)자는 매우 엄한 제품책임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내용상으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품결함의 내용

종 류	내 용
제품설계상의 결함	- 안전설계의 불충분 - 안전장치의 미비 - 기술수준의 불합격 - 주요 보안부품의 내구성 부족
제조상의 결함	- 제조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 검사불충분에 의한 재질결함·조립불량부분의 간과 - 원재료 인수 검사의 불충분
경고상의 결함	- 필요한 사용설명서 미비 - 경고내용의 불충분, 난해 - 부착장소의 부적합 - 과대광고 - 설명 불충분 - 읽기 어렵고 난해한 설명문 부착 - 불확실한 보증내용 - 잘못된 선전, 부실광고

나. 외국의 PL 동향

외국의 PL 동향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63년 발생한 그린맨 사건으로 부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전동공구 키트를 조작하던 중, 나뭇조각이 튀어 올라 앞머리를 다쳤다. 원고의 소송에 대해 원고가 제품의 결함만을 입증한다면,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미국의 모든 주가 PL 소송에서 이를 적용하고 세계 각국에서 입법화하고 있는 PL법의 원류가 되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이 매우 엄격하다는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PL은 과실책임의 사상에 근거하여 판단되어 오다가 20세기 후반에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현

대 사회에서는 제품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진 판매자 측이 제품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어 성문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60년 초반 구(舊)서독과 영국에서 대량 피해자를 낸 '사리드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EU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적인 PL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검토를 시작하여 1985년 'PL에 관한 EU지침'으로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된 1994년 6월 22일에 '제조물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 국내의 PL법 추진 현황

국내에서는 1982년 2월 김순규의원 외 25명이 제 110회 임시국회에서 의안 제231호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안했으나 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와 함께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에서는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 1백대 국정과제 중 한 부문인 제조물책임법의 조기 도입을 위해 1998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시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IMF 경제하에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2~3년 후로 늦춰 실시하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정부나 기업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 시행시기의 결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3. PL법의 影響과 波及 效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시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 그

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소비자 피해 보상요구 급증

품질보증과 PL 인식도 조사결과(서경대와 KSA 합동조사, 1997. 5)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표 2와 같이 요구해 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다는 체념적인 생각과 요구 자체가 귀찮다는 응답이 많아 현재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PL법은 단기간에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표 2〉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
(제품의 불량률 보증기간 내 발견한 경우)

구 분	응답(%)
고장난 적이 없어서	29.2
보상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26.8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27.8
경험상 들어주지 않아서	9.2
기 타	7.1

일본의 경우 PL법을 시행한 후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의하면 PL법 시행 4개월만에 전국 320개 소비자생활센터에 신고된 제품의 위해정보가 총 2,580여건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업계별 PL센터(1995년 12월말 현재 15개소)에서도 PL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0~200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가 PL법과 관계없는 제품의 사용법 등에 관한 문의이지만 중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임은 분명하다.

국내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이 나서더라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인데 PL법 시행시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와 소송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나.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至大

PL법의 시행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사가 500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산라인의 정지, 신제품의 발매 중지, 제품 개발 연구 중지 등 기업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 및 PL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와 비용의 증가로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너무 신중하게 대처한 나머지 제품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표 3 참조).

〈표 3〉 PL문제가 미치는 영향

영 향	응답(%)
공장 폐쇄	9
종업원 일시 해고	16
생산라인 정지	47
신제품의 발매 중지	39
흡수 합병 중지	22
제품 개발연구 중지	25
해외로 생산 이전	4
시장점유율 감소	22

출전 : 「PL법의 충격」, 1998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PL법 시행을 계기로 표시방법을 개선하거나 소비자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품질보증·품질관리에 노력하거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PL센터를 설치하는 업종이 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제조업자에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코스트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나라는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및 경영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 중소기업

체의 수가 98%, 전 부가가치생산액의 47% 및 고용창출이 70%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PL법이 제정될 경우 그 파급효과로서 ① 상대적으로 기술 및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 ②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대기업 제품 선호경향을 보이는 등 PL법은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다. 생산원가 상승 요인

PL 제도 운영에 따른 보험료 등 지불비용은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중소기업은 연간 수출액의 0.2~0.5%를 보험료로 내 왔으며 전자업계에서는 PL 방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원가부담이 5% 가량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 즉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PL법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한 위원회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책임비용으로 조사대상기업의 36%가 소송에 걸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또 30%는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1%는 제품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PL제도 운영은 기업의 제품개발 리스크를 높여서 신제품개발을 저해한다거나 우량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분이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PL법 시행에 따르는 제반 손익이 국민 모두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지 못한 총동소비, 취약한 중소기업 구조,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등 국내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 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

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PL법 시행과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PL 대책

PL법 대책은 무엇보다도 Top의 경영방침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이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전사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가. PL 대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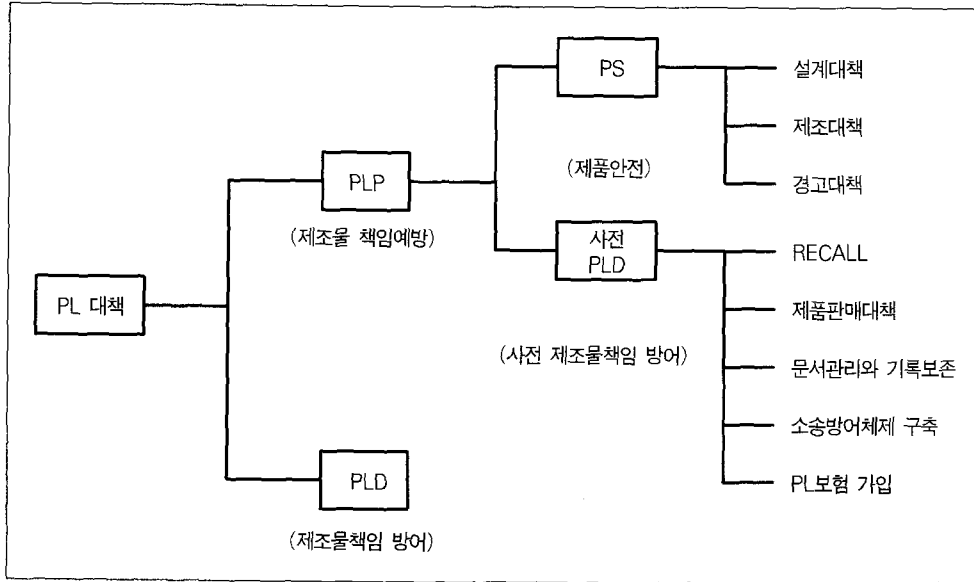
기업의 PL 대책으로는 결함제품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물책임예방(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소송에 지지 않기 위한 제조물책임방어(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로 크게 나누며 PLP는 제조물안전(PS : Product Safety)과 사전제조물 책임방어로 나누어지는데 그 일반적인 PL 대책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나. 사내 시스템 구축 운영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제품결함 발생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사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내에 진단팀을 구성하거나 외부의 자문을 받아 현재의 시스템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하고 필요시 시스템의 재구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PL 대책을 위한 조직구축

기업에 맞는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내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결정하고 나아가 사내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1〉 PL 대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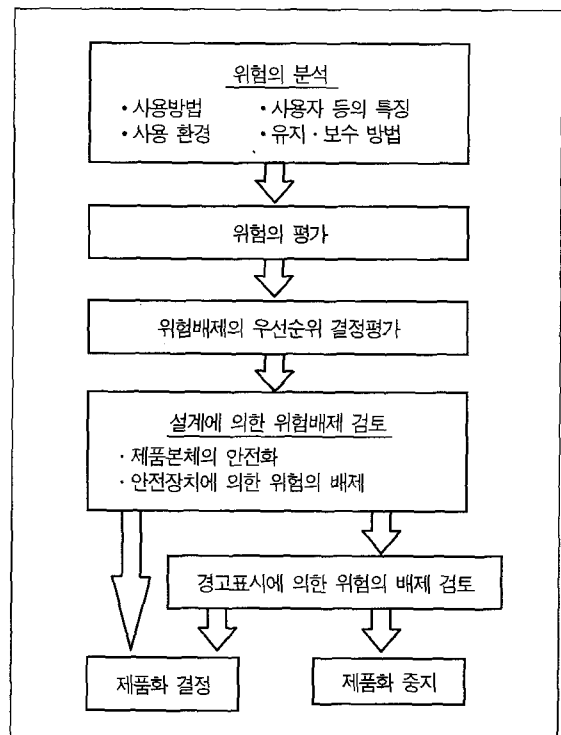
전사적 조직은 ① 전사적 PL전략 수립 및 조직관리, ②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③ PL교육 총괄, ④ 전사관련 규칙운용 등을 담당하고, 실무조직은 ① PL 시험법 개발, ② 사고제품분석, ③ 각종 매뉴얼의 검토·승인, ④ PL정보 수집·분석, ⑤ PLP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2) 제조물 안전(PS : Product Safety)

PLP의 관점에서의 '제품 안전 대책'을 말하며 제품 자체의 안전 설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소프트라고 할 수 있는 '취급설명서'와 제품 본체에 첨부된 '경고 라벨'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제품 전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에 주도한 활동이다.

(가) 개발·설계대책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설계단계에서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림 2에 나타낸 순서로 제품의 안전여부를 검토한다.



〈그림 2〉 제품안전을 검토하는 순서

또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기획, 조사단계에서 표적이 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다(업계 전체 및 자사와 경합제품의 수준, 사회의 요구, 관련법규, 소송 동향 등)
- ② 제품 사용자와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상 예견되는 위험을 간파한다.
- ③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④ PL에 관계되는 중요 구성품에 대해 신뢰성 예측, 고장해석 등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 ⑤ 불가피하게 위험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실내용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주의표시, 사용설명서 등).
- ⑥ 설계심사 및 각종 시험의 실시와 더불어 이들 자료를 정리, 보관, 활용한다.

(나) 제조대책

제조대책은 한마디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의 품질향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급되는 원·부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우량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지도와 관리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작업미스나 검사미스에 의한 결함상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각종 표준 및 절차가 제·개정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사내의 품질향상운동은 전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검사시의 결함발견·제거, 리콜, PL 소송 등에 대비한 로트 추적체계 확립 및 기록 확보도 필요하다.

(다) 경고대책

경고표시란 제조물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제조물 사용상의 위험을 적절히 경고할 의무가 있다.

1994년 일본 통산성은 '표시·취급설명서 적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① 취급설명서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

정 및 품목별 표시·취급설명서의 바람직한 방향, ② 통일된 경고기준의 책정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러한 경고대책은 정부차원의 대책과 동종업계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검토대상은 경고표시의 장소, 취급설명서의 경고표시, 경고라벨에 의한 경고표시 등이며 경고라벨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p>① 배경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이 가진 위험의 분석 - 경고 대상자의 분석 - 제품 사용환경의 분석 - 유사 제품 및 당해 제품에 관한 과거 판례의 분석 - 경쟁 타사 제품의 설계·경고라벨의 분석 								
<p>② 경고라벨 작성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처리 방법의 검토 - 경고 필요성의 검토 - 전달해야 할 내용의 검토 								
<p>③ 경고라벨 설계의 구체적 절차</p> <table border="0"> <tr> <td>- 경고문구 결정</td> <td>- 색 결정</td> </tr> <tr> <td>- 그림표시의 결정</td> <td>- 경고문 결정</td> </tr> <tr> <td>- 위치 결정</td> <td>- 크기 결정</td> </tr> <tr> <td>- 소재 결정</td> <td></td> </tr> </table>	- 경고문구 결정	- 색 결정	- 그림표시의 결정	- 경고문 결정	- 위치 결정	- 크기 결정	- 소재 결정	
- 경고문구 결정	- 색 결정							
- 그림표시의 결정	- 경고문 결정							
- 위치 결정	- 크기 결정							
- 소재 결정								
<p>④ 필요에 따라 변호사·전문가에게 체크를 받는다</p>								

또한 경고표시의 포인트는 경고의 수는 가능한 적게, 표현은 간결·명료하게 읽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주목시키는 것이다.

(3) 제조물 책임방어 (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

제조물 책임방어는 PL 사고후의 방어대책이며, 소송대책이 중심이 되나 소송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록의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사전 대책도 포함된다. 따라서, PLD는 배상 책임의 경감 또는

회피 때문에 타협해야 할 사전·사후 대응의 전반을 가리킨다.

(가) Recall(제품회수)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유통중에 있는 결함상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로 기업은 리콜에 관한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문서관리와 기록보존

가장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PL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들의 각종 기록문서(자료·도면 등)가 기업으로서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였다는 증거·항변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L 클레임·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반증·증거 문서로서 기록·자료를 적절히 수집·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간이지만 그 이후에도 과실책임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 PL 보험

PL 보험이란 제조업자가 결함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러한 PL 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대상제품 선정과 보험기간이 검토되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기전용 수출 PL 보험제도"라든지 보험료를 융자하거나 분담하는 방안도 이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도 비용상승요인을 경영혁신으로 줄여나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PL 체크항목

제조물책임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는 표 4와 같으며 이 체크포인트에 따라 각 부문의 책임과

권한의 확립이 요구되며 또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PL 대책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걸고 대처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특히 자금이나 인적자원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PL법 시행시 도산이나 파산의 우려가 있는데 PL 시스템구축, 사원교육, PL 보험, PL 소송에 대한 정부 차

〈표 4〉 PL 체크 항목

분 류	구체적인 체크 항목
사내체계	- 소비자의 안전이 경영방침에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PL조직	- PL대응 조직이 운영되는가? - PL위원회가 운영되며 관련부서가 참가하는가?
사내교육	- 사원교육은 어느 정도 있는가?
개발, 설계	- 안전한 제품설계가 되었는가? 대체 설계는? - 사용자의 지식,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 있는가? - 신뢰성 설계가 되어 있는가? - Fail Safe, Fool Proof식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 예견되는 오용·오작동에 대처된 설계인가? - 각종 안전 규격에 적합한 설계인가? - PL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심사가 이루어져 있는가?
기록보존, 문서관리	- 사내에 기록보존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 보존기간에 문제는 없는가? - PL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질문에 대한 회답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PL 보험	- 대상이 되는 상품은? - 보상한도액은 얼마인가?
제조, 검사	- 정해진 제조공정을 준수했는가? - 수입 검사이 충분히 결함 부품을 선별했는가? - 설계변경, 제조공정 변경시, 즉시 대응하는가? - 제조시의 결함은 충분히 선별했는가? - 검사방법은 합리적이며, 철저히 준수되었는가?
판매·서비스 및 광고	- 판매부문이 PL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소비자에게 상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충분히 인식시켰는가? - 적절한 경고 문구 및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가(경고 의무 준수)? - 고객까지의 경로 추적이 가능한가? - 광고, 취급 설명서, 경고 문구의 표현이 충분한가? - A/S 조직 및 그 운영은 최적인가? - A/S 정보의 피드백이 되어 있는가? - 결함 상품의 회수·수리 및 처리 체제는 우수한가?
회 수	- 시장의 상품을 회수, 검사, 수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 회수 기준은 결정되어 있는가?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결합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이 자사의 얼굴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부담을 관리부문 혁신과 공정혁신, 제품혁신으로 소화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PL 소송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내 서류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부문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관리부문의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지필름이 판매하는 중소기업용 광파일 시스템을 구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원래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PL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위험관리와 관리부문 혁신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부문 외에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도 촉진되고 있다. 일본의 전자업체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제조업체가 제품 폐기처리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PL법 발효에 대응, 사용부품수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용 부품수를 대폭 줄이면 품질관리가 편리해지고 부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이 절감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도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새로운 사업전개의 컨셉트로 삼아 새로운 제품개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본 미쓰기프리사의 중공축형 감속기, 산코사의 PL법 대응 전용 글라인더, 히카리사의 자동정지기능을 가진 등유용 밸브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이들 모두는 PL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제품에 안전

이라는 개념을 넣은 상품들이다.

5. 맺음말

PL 제도는 수출상품이나 국내소비제품에 동등하게 PL 책임이 지워지게 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은 더욱 커졌다. 이 경우 기업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저가 제품생산을 위한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품질경영의 ISO 9000, 환경경영의 ISO 14000에 이어 안전·보건분야의 ISO 18000 국제규격도 작성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품질, 환경, 안전, 보건 모두가 경쟁력 지표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조차 해외 우수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업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에 비추어 정부 및 기업은 PL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제조물 책임대책, 대광서림, 1995. 1
2. 제조물 책임, 한국공업표준협회, 1991. 12
3. 알기 쉬운 PL법 해설, 21세기 북스, 1995. 5
4. PL법 기업이 모르면 망하고 소비자가 모르면 손해본다. 정림출판, 1995. 6
5. 품질경영 4월호, 한국표준협회, 1996. 4
6.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7. 신한 리뷰